

## 이혼 및 별거(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미국의 사회안전망의 대응과 한국적 함의\*

윤 홍 식 \*\*

### [요 약]

최근 가족해체의 급격한 증가는 한국사회에 모자가정의 빈곤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사회에서 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에 대한 사회정책의 가시적 대응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가족구조의 변화 즉, 이혼 및 별거 등으로 야기되는 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종단적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국적 함의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미국사회에서 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의 주된 원인인 가족해체로 인하여 많은 수의 모자가정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편입되고 있는 현실에 반해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자가정의 긴급한 요구에 대한 공공부조 개입의 지체, 낮은 급여수준, 불충분한 아동양육비 수준 등과 같은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모자가정의 빈곤화가 가족해체이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의 실패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모자가정 빈곤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사회구조적 접근과 함께 가족해체로 인한 요인을 고려하여 해체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주제어: 가족해체, 이혼, 사회안전망, 모자가정, 빈곤

\* 이 논문은 2002년도 전북대학교 신입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전북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전임강사

## 1. 서론

최근의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는 전통적 가족가치관에 대한 도전과 함께 가족의 기능적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한국사회에 던져 주고 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1991년 11.3%이던 이혼율이 불과 십 여 년단인 2002년에는 47.4%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통계청, 2002: 통계대신문, 2003년 3월 29일). 결혼한 두 쌍 중 한 쌍 정도가 이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는 이제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가 서구사회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닌 산업화 사회의 일반적 특성으로 많은 한국인 삶의 과정에서 이미 하나의 주요한 생애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에 대하여 한국사회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집단적이고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가치가 강하게 강조되는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가족구성원, 특히 이해당사자인 여성과 남성의 가족에 대한 개인적 책임의식과 도덕적 문제로 접근되고 있다(변화순, 1997). 전통적 가족관에 입각하여 이혼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이며 악덕으로 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한경혜, 1993). 즉, 한국사회에서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가 사회의 구조적 측면으로 이해되기보다는 개인의 도덕성과 가족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현상을 개인의 도덕성이나 책임감의 문제로만 간주하기에는 가족해체가 가져오는 결과가 당사자인 개인은 물론이고 전체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심각한 사회적 우려가 담겨 있는 것이다.

최근의 높은 이혼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는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광범위한 확산은 전체가구 중 여성가구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이는 바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화(Feminization of poverty) 문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가족해체가 여성 및 아동이 빈곤에 처하게 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Arendell, 1986; Bumpass, Sweet, & Martin, 1990: 8; Garfinkel, 1992; McLanahan & Booth, 1989; Schiller, 1995; Teachman & Paasch, 1994). 모자가정의 빈곤율은 결혼해체(합법적인 별거를 포함해서) 삼 개월 전에 13%에서 결혼 해체 후 33%로 무려 146%나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Yoon & Lee, 2002). 한국의 경우 결혼해체를 전후 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찾기는 힘들지만 단순히 저소득 모자가구의 형성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이혼에 의한 모자가구 형성이 43.7%로 가장 높고 다음이 배우자 사망(43.3%), 배우자 기출 및 유기

- 1) 명시한 이혼율은 당해연도 총 이혼건수를 총 혼인건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해서 얻은 값이다. 이러한 이혼율 계산법은 매스미디어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방법으로(이소희 외, 1998) 정부의 공식통계로 사용되는 조이혼율(인구천명당 이혼자수)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언급했듯이 한국의 이혼율은 2001년 현재 42.2%인데 반해 인구 천 명당 이혼자수인 조이혼율은 28명이다(통계청, 2002).
- 2) 실제로 통계청([On-line])의 한국인의 이혼에 대한 태도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1998년 현재 "어떤 이유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와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60.3%에 이르는데 반해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와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한다"는 응답은 불과 8.6%에 그치고 있다.

(5.4%), 미혼모 및 기타 사유(7.6%)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미숙, 박민정, 이상현, 홍석표, 조병은, 원영희, 2000). 또한 1999년 현재 공적부조의 대상이 되는 전체 68,815 저소득 편부모 가구 중 편모가구의 비율이 81.6%로 편부모가구 18.4%에 비해 무려 4.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미숙 외, 2000).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성가구주 빈곤의 문제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은 물론이고(Duncan & Hoffman, 1985; Hanson, McLanahan, & Thomson, 1998), 전체적으로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사회적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박병현(1997)의 연구에 따르면 30대 모자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2.4%가 빈곤이 일시적 문제가 아닌 장기적 문제로 그들의 삶에 질곡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시빈곤가구 중 여성가구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에 15.1%에서 1990년에 29.4%로 무려 94.7%나 증가했다는 것이다(김영란, 1997).

그러나, 문제는 가족해체가 여성 및 그 가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자체에 있기보다는 가족해체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에 대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빈곤과 소득저하의 주요원인인 노령, 장애, 실업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은 사회보험의 형태로 근로능력 상실 이전의 소득을 보전해 주려는 역할을 수행하고, 절대적 빈곤문제에 대해서는 공공부조를 통해 최저생계를 보장해주고 있으나, 가족해체라는 빈곤과 소득저하의 또 다른 원인에 대한 대응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류정순(2001)의 지적처럼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의 주요한 원인으로 사회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고찰하였을 때 복지정책의 대응은 여성빈곤의 한 측면인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빈곤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sup>3)</sup> 더불어, 가족해체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의 문제에 대해 사회안전망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구체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관계로 그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가족해체와 빈곤의 여성화의 문제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구체적으로 고민되어지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연구의 주요한 의의는 가족구조의 변화 즉 이혼 및 별거로 야기되는 가족해체<sup>4)</sup>로 인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문제에 대해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최근 급격한 이혼을 증가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전달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경험적 연구를 위한 한국의 중단적 자료 획득에 많은 제약이 있는 관계로 방법론적인 측면, 자료 사용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를 그 분석대상으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유의미한 함의를 한국사회에 적용시키고자 한다.<sup>5)</sup>

3) 여기서 "사회 구조의 변화란 노동시장의 구조, 소득분배의 구조, 복지정책의 방향의 변화를 의미하며 가족 구조의 변화란 주로 이혼이나 사별을 통한 가족해체"라고 규정하고 있다(류정순, 2001, p. 155).

4) 본 논문에서 가족해체는 이혼과 별거의 경우를 의미하며, 사별, 유기와 같은 또 다른 형태의 가족해체는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5) 실제로 한남세(1991)와 문현숙, 김득성(2000)의 지적처럼 이혼이라는 주제의 민감성과 중단적 자료(longitudinal data)의 결여로 당분간 한국에서 이러한 주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현실적으로 불가

## 2. 선행연구 검토

가족해체로 인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저하와 빈곤문제는 그간 많은 연구자들을 통해 분석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Duncan & Hoffman, 1985; Hanson, McLanahan, & Thomson, 1998; Peterson, 1996).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가족해체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해체를 전후로 한 소득수준의 변화와 빈곤실태만을 고찰했을 뿐, 본 연구의 주요 주제인 가족해체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 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대응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 속에서 선행연구의 주된 검토대상은 이혼을 통한 가족해체가 미국 여성 및 여성가구주 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로 제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만 이혼 및 별거를 전후 한 모자가성 및 여성의 공공부조 수급율의 변화를 단편적으로 언급하는 몇 가지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한경혜(1993)의 지적처럼 이혼을 통한 가족해체가 여성 및 여성가구주 가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없는 실정이고 보면, 한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한국사례의 경우 몇 편의 횡단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의 사례를 보충하는 수준에서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는 주요하게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했다. 첫 번째로 가족해체(이혼 및 별거)가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일반적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으로 가족해체이후의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원천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겠다. 특히 소득원천에 대한 고찰은 가족해체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대응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가족해체를 전후 한 이전소득의 변화에 대한 고찰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사회안전망으로서 가족해체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직접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구소득의 구성비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이혼을 통해 여성은 심각한 경제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합의하고 있다 (Arendell, 1986; Bumpass et al., 1990; Garfinkel, 1992; McLanahan & Booth, 1989; Schiller, 1995; Teachman & Paasch, 1994).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종합해본 결과 이혼 전 후의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비교해 보면 대략 6%에서 70%의 소득수준의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분야의 초기의 연구자인 Hoffman(1977)의 연구에 따르면 이혼으로 인해 여성은 대략 6% 소득수준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과 Hoffman(1985)의 인종적 차이를 고려한 연구 또한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소득 욕구비율(Income-to-needs ratio)<sup>6)</sup>이 백인 이혼여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히 미국의 사례를 방법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 서구 선진국 중 유일하게 명시적 가족정책 존재하지 않는 국가이기므로 반면교사의 측면에서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며 실용적으로는 자료 접근의 용이성에 기인하고 있다.

6) 소득-욕구비율(income-to-needs ratio)은 가구의 총소득을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미국의 공식 빈곤선(poverty threshold)으로 나눈 값이다.

성의 경우 11%감소하고 흑인 여성의 경우 29%감소한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이혼 전후의 소득비교에 있어 중요한 결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Stirling(1989)에 의하면 이혼이후 여성의 소득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 이혼 당해연도를 포함시킴으로 인해 이혼이 여성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만약 김이라는 여성이 1999년 8월에 이혼을 했을 경우 이혼 당해 년도의 소득수준을 이혼이후의 소득으로 측정함으로써 실제로는 1999년 1월부터 1999년 7월까지의 이혼전의 소득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Stirling의 연구에 의하면 이혼 2년 후 소득-유구비율은 약 32%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더 나아가 Weitzman(1981)의 연구<sup>7)</sup>는 이혼이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록 Los Angeles 지역으로 표본이 한정된 한계는 있지만 이혼 및 별거를 통해 여성은 무려 73%의 소득감소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편모가구의 77.4%가 양부모 가정에서 편모 가정으로 변함에 따라 경제수준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김미숙 외, 2000). 그러나 김미숙 외의 연구의 경우 그대상자가 저소득가구로 제한되어 있고 이혼을 통한 가족해체뿐만 아니라 사별, 배우자 유기, 가출, 장기복역, 미혼부모를 포함하고 있어 순수하게 이혼을 통한 경제적 영향을 고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문현숙과 김득성(2000)의 연구는 이혼을 경험한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경제적 형편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 이혼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고찰 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표본수가 13 사례에 불과해서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문현숙과 김득성의 연구에 따르면 62%(8사례)의 여성이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해체가족유형에 따른 경제생활의 변화를 조사한 김승권, 이태진, 김유경, 송수진(2001)에 따르면 편모가정의 70.7%가 가족해체 이후 경제생활이 매우 또는 약간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접근 가능한 종단적 자료의 부재로 인해 미국의 경우처럼 가족해체를 전후로 한 여성 및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수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다음으로 가족해체를 전후 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구성에서 이 전소득의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족해체 전 후 이 전소득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공적이적소득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사적이전 소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중 공적이전소득에 관한 문제는 1996년 미국의 복지개혁입법(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의 가장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가 되었는데 복지개혁입법의 주요한 목적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복지존성을 고용증대를 통해 줄이자는 것이다(U.S. House of Representatives, 2000). 실제로 모자가정의 경우 가족해체 후 처음으로 공공부조의 수혜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복지수혜자중 모자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eachman과 Paasch(1994)의 연구에 따

7) Weitzman의 연구는 후에 Weitzman과 동일한 데이터와 방법으로 행한 Peterson(1996)의 연구에 의해 여성의 소득수준저하가 지나치게 과대 평가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Peterson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약 27%의 소득수준저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Peterson의 연구를 참조하라.

르런 가족해체 전 모자가정(물론 해체 전에는 양부모가정임)중 공공부조(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sup>8)</sup>를 이용하는 비율이 약 9%에서 해체 후 1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성의 변화로 보면 AFDC는 해체 전 가구소득의 18%에서 해체 후 67%증가한 30%를 차지하여 AFDC가 모자가구의 주요한 소득원천이 되고있음을 보여준다. Bianchi와 McArthur(1991)의 연구에 의하면 모자가정의 AFDC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은 가족해체(이혼) 4개월 후 18%에서 해체 1년 후 22%로 가족해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사적소득이전의 경우(여기서는 주요하게 아동양육비(child support)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Garfinkel, McLanahan, Waston (1989)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혼여성의 82%, 별거여성의 43%가 법원으로부터 아동양육비 지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양육비는 모자가정의 전체소득의 약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 모자가정(빈곤선 이하)의 경우 아동양육비가 총소득의 38%를 차지해 주요한 소득원천의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Teachman & Paasch, 1994). 이러한 공식적인 아동양육비 이외에도 약 25%에 달하는 비양육 남성(부)이 비공식적으로 아동양육비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남편으로부터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는 아동을 양육할 때 드는 실제 비용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Teachman & Paasch, 1994). 이 같이 불충분한 아동양육비 수준에도 불구하고 아동양육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평균적으로 가구소득의 17%를 구성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25%를 구성해 가족해체 후 모자가정의 주요한 소득원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가족해체를 전후로 한 비교는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편모가정의 경우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9.0%로 전체소득구성비중 가장 중요한 소득원천으로 조사되고 있다(주인숙, 1998). 특히 모자가정의 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경우 이전소득은 전체소득의 87.7%를 차지해 소득의 대부분이 이전소득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인숙의 연구의 경우 공식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식적 이전소득의 개별적 역할을 검토하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상의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보여 주듯 기존의 연구는 주로 가족해체로 인한 소득수준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이를 보충하는 측면에서 사적이전소득으로서 아동양육비, 공식 이전소득으로서 공공부조의 총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가족해체 전후해서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 즉, 가족해체로 인한 여성의 소득수준 감소 및 빈곤문제에 대해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식적 이전소득이 어떠한 대응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본 논문의 주제인 가족해체로 인한 여성의 소득수준의 감소와 빈곤심화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에 대한 검토는 최근 급격한 가족해체의 증가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 의미 있는 함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8) AFDC는 모자가정(18세 이하의 아동을 가진)의 소득보장을 위한 현금으로 지급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다. AFDC는 1996년 복지개혁입법 이후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 전환되었다.

### 3. 연구 방법

#### 1) 자료와 표본

본 연구에서 1996년도 Panel of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SIPP)이라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SIPP은 미연방정부 인구조사국이(U.S. Bureau of Census, 2001) 매분기별로 조사하여 월별 개인과 가구의 소득과 복지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종단적 자료이다. 96년 SIPP은 1995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의 정보를 4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그룹에 속한 개인 및 가구의 48개월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40,188가구 95,402명의 개인이 조사되었다. 특히, SIPP은 미국의 대표적인 종단적 자료로서 현재까지 접근 가능한 종단적 자료 중 가장 많은 사례 수를 가지고 있는 자료이다. 또한 SIPP은 월간 소득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일년단위로 조사된 기존의 자료에 비해 소득변화의 역동성을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한 측면이 있다. 이중 본 연구를 위해 선별된 사례는 1995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이혼 또는 별거를 경험한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 223명을 대상으로 하고, 모두 가족해체 전에 18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살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가족해체 후 202명의 여성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는 가족해체 전후의 소득수준과 빈곤상태의 변화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검토를 주요한 연구주제로 하였기 때문에 223명의 표본은 가족해체 전 최소한 3개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했으며 이혼 또는 별거 후 최소한 9개월 동안 재혼을 하지 않은 대상으로 한정했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 가구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가족해체(이혼 및 별거)전후의 소득수준의 변화에 대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와 추론통계 방식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의 분석은 자료에서 제공하는 가중치변수(the weight variable)를 사용하여 표본의 속성이 전체 모집단의 속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론통계방식은 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가족해체 후 여성의 빈곤지위결정에 관계가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통계 내용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대상인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본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가족해체 이후의 연령, 교육수준, 인종, 18세 이하 아동 수, 근로시간 등을 고찰하였다. 두 번째로 가족해체를 전후한 가구의 소득 수준(소득-육구비율)의 변화를 해체 전 3개월부터 해체 후 9개월까지 다섯시기로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으로 가족해체 3개월 전(T-3), 가족해체 당시(T), 가족해체 3개월 후(T+3), 가족해체 6개월 후(T+6), 가족해체 9개월

후(T+9)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봄으로서 가족해체 후 모자가정의 소득수준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살펴 보았다. 특별히, 3개월 단위로 소득수준의 변화를 고찰한 이유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소득변화를 년 단위로 고찰함으로써 연내에 발생하는 소득변화의 역동성을 분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분기별(3개월 간격) 소득수준 변화의 고찰을 통해 소득수준의 변화의 역동성을 고찰하고자 했다. 월간 소득수준의 변화를 통해 보다 자세한 소득수준의 변화를 볼 수 있겠으나, 월간 소득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소득수준이나 경제지표를 보고하고 있어 월간대신 분기단위인 3개월 단위로 소득수준의 변화를 조사했다.

세 번째로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고찰하기 위해 가족해체 이후의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빈곤가구의 측정은 가구의 소득-욕구 비율이 1.0이하일 때 빈곤가구로 정의하였다. 사회안전망의 역할은 그 소득의 원천에 따라 4가지 주요한 이전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적이전소득으로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사회보험(연금, 실업보험), 공공부조(AFDC/TANF, SSI)를 살펴보고, 사적이전소득으로 아동양육비(Child support)의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각각의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모든 이전소득을 제외한 순 가구소득으로 가구의 빈곤율을 시간의 변화(T-3, T, T+3, T+6, T+9)에 따라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기 언급한 4가지 주요한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순 가구소득(소득이전 전의 가구소득)에 EITC를 더한 이후, EITC 이전 전의 빈곤율과 EITC 이전 후의 빈곤율을 비교함으로써 EITC의 빈곤감소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아동양육비의 경우도 EIT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 가구소득에 각각의 이전소득을 개별적으로 더해 소득이전 전후의 빈곤감소율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아동양육비의 개별적 빈곤감소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EITC, 사회보험, 공공부조, 아동양육비 이전의 빈곤감소 효과성에 대해 절대적 비교가 가능하게 하였다. 더불어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성을 가족해체 이후의 가구구성의 차이에 따라 아동양육여성 가구와 비아동양육 여성가구로 살펴봄으로서 양자의 차이를 고찰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의 역할에 대한 분석에서 공공부조와 아동양육비의 빈곤감소 효과에 대한 논의를 보충하기 위해 가족해체 전 후로 공공부조와 사적이전 소득인 아동양육비의 수급율을 관찰하였다.

추론통계 방법으로는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을 통해 가족해체 이후의 여성의 빈곤지위의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가족해체 9개월 후의 빈곤여부를 사용하였다(소득-욕구 비율이 1.0과 같거나 이하이면 1, 이상인 경우 0). 독립변수로는 나이, 인종, 가족해체 9개월 후의 아동수, 교육수준, 근로상태, EITC 이진, 사회보험 수급 액, 공공부조 수급 액, 아동양육비 수급 액, 가족해체 3개월 전의 빈곤상태 등을 사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이는 연속변수이고, 인종의 경우 백인(1)과 유색인(0)으로 구분한 가변수(Dummy variable), 가족해체 9개월 후의 아동 수는 이산변수이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기준(0)으로 고졸이하(1)와 고졸이상(1)로 두 개의 가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근로상태도 비근로여성을 기준(0)으로 주간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여성(1)과 주당 1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여성(1) 두 개의 가변수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EITC, 사회보험, 공공부조, 아동양육비는 비화 100불을 단위로 한 연속변수로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가족해체 3개월 전의 빈곤상태는 해체 3개월 전 소득-욕구 비율이 1.0 이하이면 1, 이상이면 0으로 한 가변수를

사용하였다. 해체 전 빈곤상태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가족해체 이후의 여성가구의 빈곤상태가 가족해체 이전의 빈곤상태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체 전의 빈곤지위와 해체 후의 빈곤지위와의 관련성을 통제함으로써 가족해체로 인한 여성의 빈곤지위와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 4. 연구결과

### 1)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가족해체 후 여성가구주의 90.6%가 양육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해체(이혼 및 별거)시 여성의 절대 다수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Molina, 1999; Seltzer, 1994) 일치하는 것으로서 가족해체의 증가와 모자가정의 증가간의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Molina(1999)의 연구에 따르면 약 87%의 아동이 부모의 이혼 및 별거시 어머니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적 구성은 대체로 백인의 비율이 양육권의 유구와 관계없이 80%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양육권자중 흑인(9.9%)과 히스패닉(13.8%)의 비율이 비양육여성에 비해 다소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sup>9)</sup> 교육수준의 경우 결혼해체 후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중 대학 중퇴 이상의 고학력자가 과반수가 넘는 57.4%로 비양육 여성의 31.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족해체 후 아동 수는 양육권자의 경우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은 36.5%로 나타났으며, 1명인 경우가 33.4%, 3명 이상인 경우가 28.1%로 나타났다. 근로상태의 경우, 양육권자의 경우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여성이 59.9%로 비양육권자의 33.3%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비근로상태의 경우 비양육권자가 23.8%로 17.8%인 양육권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본대상자의 나이는 양육여성과 비양육여성 이 대체로 유사했으나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의 평균나이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9) 본 연구의 경우 가족해체 후 형성된 모자가정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의 편모가정에서 흑인가정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는데 이는 흑인 모자가정의 대다수가 결혼해체, 즉 이혼이나 별거에 의해 형성된 모자가정이기 보다는 미혼인 상태에서의 아동출산으로 인해 형성되는데 주 요인이 있다. 다시 말해, 흑인의 경우 모자가정형성의 주원인은 가족해체가 아니라 미혼 출산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인 가족해체를 통한 모자가정형성에서 흑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표 1〉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가족해체 9개월 후

	양육(권)자 (n=202)	비양육(권)자 (n=21)
	백분율(%)	
인종		
백인	76.3	88.4
흑인	9.9	0.0
히스패닉	13.8	11.6
교육수준		
고졸이하	13.6	23.6
고졸	39.0	44.6
대학중퇴	33.8	24.0
대졸이상	13.6	7.8
이동 수(18세 이하)		
1명	33.4	-
2명	38.5	-
3명 이상	28.1	-
근로상태		
40시간 이상	59.9	33.3
1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22.3	42.9
비근로	17.8	23.8
	평균값	
나이(년)	34.1	33.9

## 2) 소득-욕구 비율(Income-to-needs ratio)의 변화

〈표 2〉는 가족해체 3개월 전부터 해체 당시와 해체 후 9개월까지의 소득수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가족해체 전 후의 소득수준(소득-욕구 비율)의 시간적 변화를 고찰하고 아동 양육의 여부를 통해 소득수준의 변화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의 결과와 같이 전체적으로 여성가구의 경우 가족해체 당시 해체 3개월 전에 비해 -36.2%(2.93에서 1.87)의 급격한 소득수준의 저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해체 9개월 후의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수준은 해체 당월에 비해 다소간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해체 당월의 소득-욕구비율이 1.87에서 해체 9개월 후 1.97로 약 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해체 이후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해체 후 9개월의 시점에서 여성가구주 가구는 해체전과 비교해 -32.8%의 소득수준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가족해체 전후간의 소득수준(소득-욕구비율)의 변화

	해체3개월 전 (T-3)	해체당월 (T)	해체3개월 후 (T-3)	해체6개월 후 (T-6)	해체9개월 후 (T-9)
소득-욕구 비율(Income-to-needs ratio)					
전체	2.93	1.87	2.04	1.90	1.97
양육자	2.94	1.82	2.02	1.89	1.96
비양육자	2.78	2.34	2.24	1.91	1.99
소득-욕구비율의 백분율(%) 변화					
	3개월전에서 해체당월	해체당월에서 3개월후	해체당월에서 6개월후	해체당월에서 9개월후	3개월전에서 9개월후
전체	-36.2	9.1	1.6	5.3	-32.8
양육자	-38.1	11.0	3.8	7.7	-33.3
비양육자	-15.8	-4.3	-18.4	-15.0	-28.4

많은 선행연구가 가족해체로 인한 여성가구의 소득수준의 저하의 한 원인으로 여성의 아동양육을 지적하고 있는데 (DaVarzo & Rahman, 1993; Teachman & Paasch, 1994)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의 소득수준저하가 비양육여성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가족해체 후 시간적 변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집단의 소득수준의 변화가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가구를 가족해체 후에 양육자와 비양육자 집단으로(두 그룹 모두 가족해체 전에 아동을 양육하고 있었음) 나누어 고찰한 결과 해체당월에는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38.1%)이 비양육여성(-15.8%)에 비해 큰 소득수준의 저하를 경험하는 반면 해체 9개월 후에는 양육여성이 -33.3%, 비양육여성이 -28.4%의 소득수준의 저하를 경험함으로써 양 집단의 차이가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해체당월에서 9개월 후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우 7.7%의 소득수준의 상승을 경험하는 반면 비양육여성의 경우 -15.0%의 소득수준의 저하를 경험하는 등 해체당월 이후의 소득수준의 변화의 방향이 양 집단에서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비양육여성에게 있어 해체후의 기간동안 소득수준의 회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수준의 저하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3) 가족해체로 인한 소득수준저하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

〈표 3〉은 가족해체를 전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양육여성가구와 비양육여성가구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먼저 양육여성의 경우 해체 3개월 전 빈곤율은 이전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19.4%에서 4가지 이전소득을 모두 추가했을 때 14.8%로 낮아져, 이전소득으로 인한 빈곤율 감소효과가 -2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양육여성의 경우 해체 3개월 전에 공사적 이전소득의 반빈곤 효과

(Anti-poverty effect)는 거의 없는 것으로 관찰되어 이전소득을 추가하기 전과 후의 빈곤율이 17.1%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성은 가족해체 이후에 가족해체 이전보다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보다 명료하게 나타나는데, 가족해체 9개월 후 이전소득의 양육여성에 대한 빈곤율 효과는 -33.2%로 나타난 반면 비양육여성의 경우 -10.1%에 그치고 있다. 즉, 순 가구소득(4가지 이전소득을 추가하기전의 가구소득)에 의한 빈곤율이 가족해체 3개월 전과 9개월 후 모두 비양육 여성이 17.1%와 36.7%로 양육여성의 19.4%와 42.5%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양육여성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전체이전소득을 추가한 경우 양육여성의 빈곤율이 비양육여성에 비해 4.6%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가족해체 전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

	순가구소득	순가구소득+ EITC	순가구소득 +사회보험	순가구소득 +공공부조	순가구소득+ 아동 양육비	순가구소득+ 전체 이전소득
<b>이전소득에 따른 빈곤율</b>						
<b>양육자</b>						
T-3	19.4	19.4	16.2	18.8	18.9	14.8
T	47.3	39.1	46.0	46.3	42.0	32.1
T+3	41.7	35.6	39.9	39.5	34.1	24.5
T+6	45.6	39.0	44.4	44.9	38.0	28.9
T+9	42.5	37.3	41.9	42.3	36.7	28.4
<b>비양육자</b>						
T-3	17.1	17.1	17.1	17.1	17.1	17.1
T	32.1	32.1	32.1	32.1	32.1	32.1
T+3	31.7	31.7	31.7	28.6	31.7	28.6
T+6	48.0	48.0	48.0	48.0	48.0	48.0
T+9	36.7	36.7	36.7	33.0	36.7	33.0
<b>이전소득에 따른 빈곤율의 백분율(%) 변화</b>						
	순가구소득 +EITC	순가구소득 +사회보험	순가구소득 +공공부조	순가구소득 +아동양육비	순가구소득 +전체이전소득	
<b>양육자</b>						
T-3	0.0	-16.5	-3.1	-2.5	-23.7	
T	-17.3	-3.7	-2.1	-11.2	-32.1	
T+3	-14.6	-4.3	-5.3	-18.2	-41.2	
T+6	-14.5	-2.6	-1.5	-16.7	-36.6	
T+9	-12.2	-1.4	-0.5	-13.6	-33.2	
<b>비양육자</b>						
T-3	0.0	0.0	0.0	0.0	0.0	
T	0.0	0.0	0.0	0.0	0.0	
T+3	0.0	0.0	-9.8	0.0	-9.8	
T+6	0.0	0.0	0.0	0.0	0.0	
T+9	0.0	-10.1	0.0	0.0	-10.1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여성의 경우 소득이전이 없을 때 빈곤율이

해체 3개월 전 19.4%에서 해체 9개월 후 42.5%로 무려 119.1% 증가한데 반해, 사회안전망(전체 이전 소득)의 빈곤감소효과성은 같은 기간동안 -23.7%에서 -33.2%로 40.1% 증가하는데 그쳐, 사회안전망이 가족해체로 인한 양육여성의 빈곤심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사회안전망의 빈곤감소 효과성이 40.1% 증가한데 그치지 않고 빈곤증가율과 같이 119.1% 증가했다면 양육여성의 빈곤율은 가족해체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14.8%로 같았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빈곤의 심화의 정도에 비해 사회안전망의 빈곤감소 효과성이 빈곤율 증가에 상응해서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양육여성의 경우 가족해체 전 사회안전망의 빈곤감소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해체를 전후로 해서 빈곤의 심화 정도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순 가구소득으로 산출된 빈곤율이 양육 여성에 비해 해체 전후를 통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소득을 고려했을 때 절대적 수준의 빈곤율이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 비양육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빈곤감소효과성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개별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성을 살펴보면, 양육여성의 경우 가족해체 전에는 사회보험이 16.5%로 빈곤감소효과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체 당월에는 EITC(-17.1%)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반면 해체 3, 6, 9개월 후의 경우 아동양육비(-18.2%, -16.7%, -13.6%)가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체당시에는 EITC가, 해체 후 9개월까지는 아동양육비의 빈곤감소효과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 공공이전소득으로서 EITC는 해체 초기에 사적이전소득으로 아동양육비는 해체 후기에 주요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NF와 SSI와 같은 공공부조의 반빈곤 효과는 해체 후 전 기간을 통해 미약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실제로, SSI가 장애인과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공부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부조는 주로 TANF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공부조로 인한 빈곤감소 효과는 해체 당월 -3.2%, 3개월 후 -5.3%, 6개월 후 -1.5%, 9개월 후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공부조의 미약한 빈곤감소효과성은 공공부조의 수혜율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표 4>를 보면 TANF의 경우 해체 3개월 전의 참여율은 7.8%이고 해체 3개월 후 13.2%로 최고조로 달했다가 점차 감소해 해체 9개월 후에는 11.2%인 것으로 나타났다. SSI의 경우 해체 전 3.4%의 수혜율에서 오히려 점차 감소해 해체 9개월 후 수혜율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양육비의 경우 해체당월에 27.2%의 양육여성이 아동양육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9개월 후 양육비를 수령한 여성의 비율은 50.8%로 약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각의 이전소득의 역할을 시점별로 살펴보면, 비록 해체당월부터 9개월까지 다소간의 중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양육비의 경우 해체 당월(-11.2%)과 9개월 후(-13.6%)를 비교했을 때 빈곤감소 효과성이 다소 증가한 반면, EITC(-17.3%에서 -12.2%), 사회보험(-13.7%에서 -1.4%), 공공부조(-2.1%에서 -0.5%)의 빈곤감소효과성은 같은 기간동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양육여성의 경우 해체이전과 같이 해체 후에도 이전 소득의 반빈곤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해체 9개월 후를 살펴보았을 때 이전소득의 반빈곤 효과는 오직 사회보험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고찰되었다.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비양육여성에게 비효과적인 주된 원인은 양육여성에게 있어 빈곤감소에 주요한 역할을 한 EITC와 아동양육비의 경우 그 이전소득의 발생이 아동양육

을 전체로 발생함으로써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여성의 경우 두 가지 주요한 이전소득의 수혜대상으로부터 제외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 가족해체 전후 양육기구의 공공부조와 아동양육비 수급률의 변화

단위: 백분율(%)

	해체3개월 전 (T-3)	해체당월 (T)	해체3개월 후 (T+3)	해체6개월 후 (T+6)	해체9개월 후 (T+9)
TANF	7.8	11.8	13.2	12.9	11.2
SSI	3.4	1.6	1.7	1.9	1.6
아동양육비	7.2	27.2	44.6	50.9	50.8

#### 4) 가족해체 후 여성의 빈곤지위결정 요인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

〈표 5〉는 가족해체 이후의 여성의 빈곤지위와 그와 관련 있는 변수들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 먼저 가족해체로 인한 여성의 빈곤진입의 문제와 해체이전의 빈곤상태가 해체이후의 여성의 빈곤상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가족해체 3개월 전의 빈곤상태의 여부는 해체 이후의 여성의 빈곤상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는 가족해체 이후의 여성의 빈곤문제는 해체이전의 빈곤상태와 관련 있기 보다는 해체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여성가구주의 빈곤문제가 가족해체 이전에 즉, 여성가구주 가구가 되기 이전에 이미 빈곤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기존의 주장과 시기를 달리하는 결과이다(McLanahan & Booth, 1989). 다시 말해, 가족해체 이후의 여성의 빈곤문제는 가족해체 이전의 빈곤 상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고, 가족해체 이전에는 빈곤하지 않던 여성이 가족해체로 인해 새롭게 빈곤층에 편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가족해체이후의 여성의 빈곤지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나이와 18세 이하의 아동 수는 여성의 빈곤상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8세 이하의 아동 수와 가족해체 후 여성의 빈곤지위와 관련성이 없다는 결과는, 여성에게 있어 아동양육의 문제는 가족해체 이후의 빈곤결정에 주요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후반부에 이전소득과 빈곤과의 관련성을 고찰하면서 논의하겠지만, 아동양육은 양육자의 존재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EITC, 아동양육비등과 같이 아동양육으로 인해 유발되는 소득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추론하면, 아동양육으로 인해 부양의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감소하는 소득-육구비율이 아동양육으로 인해 유발되는 추가적인 소득으로 상쇄될 경우 아동의 유무는 여성의 빈곤지위와 관련성이 없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10) EITC의 경우 아동이 없더라도 근로빈곤층인 경우 수급이 가능하지만 그 수급액의 수준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표 5〉 여성의 빈곤지위 결정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가족해체 9개월 후

	Coefficient	Odds ratio	Confidence Limits
Intercept	2.239		
나이(년)	-0.034	0.967	0.914-1.023
백인	-1.147*	0.318	0.101-0.997
18세 이하 아동 수	0.456	1.577	0.934-2.665
교육수준			
고졸이하	1.488*	4.426	1.254-15.625
(고졸)			
고졸이상	-0.063	0.939	0.352-2.504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4.435****	0.012	0.003-0.051
1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1.546*	0.213	0.063-0.722
(비근로)			
EITC <sup>a</sup>	0.258	1.294	0.819-2.045
사회보험 <sup>a</sup>	-0.354*	0.702	0.510-0.967
공공부조 <sup>a</sup>	0.111	1.117	0.870-1.434
아동양육비 <sup>a</sup>	-0.281****	0.755	0.646-0.882
해체 3개월 전 빈곤상태	0.344	1.410	0.451-4.406
Model $\chi^2$	118.535***		
df	12		
N	223		

a : EITC, 사회보험, 공공부조, 아동양육비의 단위는 \$100

\* $p < .05$ , \*\* $p < .01$ , \*\*\* $p < .001$

인종과 교육수준의 경우 가족해체이후 여성의 빈곤지위 결정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종을 살펴보면, 백인여성의 경우 흑인 및 히스패닉 여성에 비해 가족해체 이후에 빈곤에 처할 확률이 68.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147,  $p < .05$ ).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학력이상의 여성은 다른 여성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여성의 경우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약 4.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저학력 여성의 빈곤상태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었다(1.488,  $p < .05$ ).

다음으로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주당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여성의 경우 다른 여성에 비해 빈곤상태에 있을 확률이 98.8% 적은 것으로 나타나, 만약 여성이 가족해체 이후 4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다른 여성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435,  $p < .001$ ). 비록, 주당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여성에 비해서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지만, 주당 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여성의 경우도 다른 여성에 비해 빈곤에 처할 확률이 78.7% 정도 낮게 나타났다(-1.543,  $p < .05$ ). 이는 가족해체 이후의 여성의 빈곤지위 결정이 여성의 근로상태와 매우 주요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Bianchi & McArthur, 1991; Duncan & Hoffman, 1985; Stirling, 1989).

마지막으로, 이전소득의 수급 액 수준과 가족해체 이후의 여성의 빈곤상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EITC와 공공부조의 경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보험과 아동양육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양육비의 경우 양육비가 \$100 증가할 때마다 여성 가구주 가구가 빈곤에 처할 확률이 22.5%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0.281,  $p < .001$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양육비의 빈곤감소효과성이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이한 점은, EITC와 아동양육비에 비해 빈곤감소효과가 기술통계분석에서 낮게 나타난 사회보험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여성의 빈곤지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0.357,  $p < .05$ ), EITC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 4)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가족해체에 대한 미국 사회안전망의 역할의 고찰을 통해 가족해체의 급격한 증가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정책적 함의의 전달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한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사회에 정책적 함의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미국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에서 중단적 자료 접근의 제한이 물리적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한국과 미국의 다른 문화적 사회경제적 차이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일반화하기는 많은 잠재적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한국적 함의는 미국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 한국의 사회안전망을 위한 정책적 접근의 참고자료로 그 역할을 제한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자료 자체의 한계에 기인하는 문제로서 모집단으로부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추출된 표본의 수가 223사례에 불과하고 비양육자가 21사례로 집단 간의 차이의 유의미한 통계분석을 사용하기 곤란했다는 것이다. 단순한 실례로 양육여성과 비양육여성의 교육수준을 비교했을 때 기술통계 결과는 양육여성의 학력수준이 비양육여성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카이스퀘어 분석을 통한 두 집단 간의 교육수준의 차는 일부 셀의 사례의 수가 5이하인 관세로 합당한 분석을 하기가 곤란했다(〈표 1〉 참조).

## 5. 결론 및 한국 사회정책에 주는 함의

본 논문의 목적은 가족해체로 인한 여성의 빈곤심화에 대해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단순히 가족해체를 전후 한 여성의 소득수준변화와 빈곤상태를 살펴본 것과 비교해, 본 연구는 가족해체로 인해 야기되는 여성의 빈곤심화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분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는 SIPP이라는 종단적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가족해체를 전후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 변화에 대한 분석시간 단위를 연간단위에서 분기단위로 축소함으로써 소득수준, 빈곤상태, 사회안전망의 역할의 시간적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개략을 통해 미국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살펴봄과 함께 한국 사회복지정책에 주는 함의를 논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해체로 인한 여성의 소득수준저하와 빈곤문제는 가족해체 이전의 여성의 빈곤지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나(〈표 5〉 참조), 여성의 소득저하와 빈곤의 심화는 가족해체이전의 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 해체로 인한 가족구성의 변화, 주요하게는 주 소득원자(남성)의 상실로 인해 유발된다는 것이다. 이는 McLanahan과 Booth(1989)등 일부선행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제기되었던 해체전의 빈곤상태와 해체이후의 빈곤상태의 관련성에 대해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즉, 가족해체로 인해 해체이전에 빈곤하지 않았던 많은 여성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편입되어 진다는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둘째, 가족해체의 영향을 양육여성파 비양육여성으로 구분하여 가족해체로 인한 빈곤문제가 아동양육의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빈곤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가족해체로 인한 여성의 빈곤문제는 대다수의 여성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현실에 근거해 아동양육이 해체 이후 여성의 빈곤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주장한데(DaVanzo & Rahman, 1993; Teachman & Paasch, 1994) 반해, 본 연구의 결과는 오히려 비양육여성의 빈곤문제가 양육여성의 빈곤문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비록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안전망으로서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성이 양육여성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해체로 인해 많은 여성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편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사회안전망은 빈곤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양육여성의 경우 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 해체 3개월 전과 해체 9개월 후를 비교했을 때 무려119.1% 증가한데 반해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성의 증가는 동기간 동안 40.1%의 증가에 그치고 있음으로 인해 가족해체로 인한 신 빈곤층 발생에 대해 사회안전망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sup>11)</sup>(〈표 3〉 참조). 실제로 공공부조의 역할을 살펴보면, 공공부조의 빈곤감소의 효과성은 해체 3개월 전 -3.1%에서 해체 9개월 후

11) 빈곤율과 반빈곤 효과의 퍼센테이지 변화율은 〈표 3〉에 근거하여 별도로 계산한 수치임.

-0.5%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충분한 사회안전망의 빈곤감소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적이전으로 아동양육비와 공적이전으로 근로소득공제(ETIC), 사회보험의 빈곤감소효과성이 해체 이후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로저스틱 회귀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근로상태의 있는 여성의 경우 그렇지 못한 여성에 비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를(Bianchi & McArthur, 1991; Duncan & Hoffman, 1985; Stirling, 1989) 지지하는 결과로 가족해체이후의 여성의 빈곤실태는 여성의 근로상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사회를 중심으로 한 가족해체의 경제적 영향과 사회안전망의 대응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 정책적 함의를 한국사회에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미국자료에 근거한 결과에 대한 함의를 한국사회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양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가 상존하므로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두 국가 모두 가족해체로 인한 여성의 빈곤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도화하고 있지 않다는 유사성에 근거한다면, 제한적이거나 다 가족해체에 대한 한국 사회안전망의 대응 방식을 고민하는데 유의미한 함의를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미국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도 가족해체는 빈곤의 여성화 문제에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종단적 연구는 아니지만 김미숙 외 (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저소득 모자가정형성 유형 중 이혼에 의한 경우가 43.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여성의 빈곤의 사회구조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가족구조의 변화의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첫째, 미국의 경우 가족해체로 인한 여성의 빈곤문제에 대해 공공부조가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을 보장해야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가족해체로 인해 새로이 빈곤층에 편입된 모자가정에 대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내의 긴급 생계급여<sup>12)</sup>의 경우 수급조건이 “주 소득원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보건복지부, 2001, p. 69)으로 수급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가족해체, 즉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을 때도 긴급 생계급여의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족해체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양육(권)자와 함께 나누도록 하는 정책이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보여 주듯, 가족해체이후 비동거 부(父)로부터 제공되는 아동양육비는 빈곤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부(父)의 41.9%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중인 여성의 경우 70.9%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경애, 김병근,

12) 긴급 생계급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수급대상자가 급여신청만으로 실제 수급자로서의 판정이전에 필요한 경우 시, 군, 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생계급여를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이다(보건복지부, 2001).

2001)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하겠다. 현실적 대안으로는 가사소송법 제64조 1항과, 제67조 1항, 제68조 1항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 대하여 감치처분 또는 과태료를 적용함으로써 양육비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 [On-line]).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부부간의 합의 또는 법원판결에 의해 결정된 양육비에 대해 비양육자의 소득으로부터 원천 공제하는 방법과 스웨덴과 같이 아동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선급 하여 아동양육비를 양육권 자에게 지급해주고 사후에 부양의 의무가 있는 비양육권 자로부터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Winkler, 2001).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 여성의 근로상태는 가족해체 이후 여성의 빈곤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여성가구주에 대한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여성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립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창출의 문제만으로 모자가정 및 여성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직업별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2000년 현재 전체 취업자중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단순노무직, 농업 및 어업, 서비스 근로자,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가 8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2001). 덧붙여,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월 급여 환산 액은 514,150원으로 (노동부, [On-line]) 2003년도 2인 가족 최저생계비 589,219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On-line]). 그러므로 여성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근로소득을 보충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도(EITC)의 도입을 통해 모자가정의 소득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EITC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보여주듯 가족해체이후 빈곤감소효과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공제제도는 일부 사회에서 우려하는 수급자의 복지존성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지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족해체(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해체)의 문제는 가족 자체의 와해이기보다는 가족구조의 변화라는 시각에 근거하여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복지욕구를 담아내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가족해체의 문제를 개인적 결정에 근거한 결손가정의 양산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해서 가족해체로 인한 다양한 가족행태의 출현을 사회구조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전환적 시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국사회가 가족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체해나가기보다, 가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가족행태의 변화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 시켜내는 정책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미숙, 박민정, 이상현, 홍석표, 조병은, 원영호. 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계실태와 정책과제』, 정책보고서 200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연, 이태진, 김유경, 송수진. 2001. 『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1-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란. 1997.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제31호, pp. 1-28.
- 노동부. 2001. 『혼인상태 및 직업별 여성취업자 분포 (2000)』,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
- 노동부 ([On-line]). 보도자료: 금년도 최저임금(안) 2,275원으로 심의 의결.  
<http://www.molab.go.kr/>
- 류정순. 2001. "외환위기 이후 빈곤의 여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창립기념논문집』, pp. 141-160.
- 문현숙, 김득성. 2000.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3호, pp. 99-120.
- 박병현. 1997. "빈곤의 지속기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2호.
- 법무부 ([On line]). 가사소송법. <http://www.mcj.go.kr/>
- 변희순. 1997. "이혼여성의 문제와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지41호.
- 보건복지부.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 ([On-line]).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2호, 2003년도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oss.mohw.go.kr/>
- 성정현, 송다영, 정미숙, 한정원, 김진. 2001. "재판이혼의 사례를 통해 본 한부모가 족의 자녀양육비 실태와 대안". 『사회복지연구』, 제18권 가을호, pp.29-58.
- 이소희, 정민자, 김경희, 박인전, 손지미, 김영란, 홍계옥, 도미향, 김민정. 1998.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 소경애, 심병근. 2001. "이혼가정의 자녀보호의 제도의 문제점: 이혼가정의 자녀 양육실태 및 의식에 대한 설문 분석". 『월간 가정상담』, 제214호.
- 주인숙. 1998. "편모가정의 가계경제상태 평가". 『자연과학연구』, 제5호, pp. 1-13.
- 통계청 2002. 『2001년 인구동태통계연보 (혼인, 이혼편)』.
- 통계청 ([On-line]). "통계자료: 이혼에 대한 태도", <http://www.nso.go.kr/>
- 한겨레신문. 2003년 3월 29일. 하루 840쌍 결혼, 398쌍 이혼.
- 한경태. 1993. "한국 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이혼과 가족문제』, pp. 79-104.
- 한남제. 1991. "산업화와 가족해체의 증가: 이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춘계학술 세미나 발표논문 요약집, pp. 62-70.
- Arendell, T. (1986). *Mothers and divorce: Legal, economic and social dilemma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ianchi, S, McArthur, E. (1991). *Family disruption and economic hardship: The short-run picture for children*, Series P-70, No. 23. Bureau of the Censu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Bumpass, L., Sweet, J., & Martin, T. (1990). Changing patterns of re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pp. 747-756.
- DaVanzo, J. & Rahman, O. (1993). "American families: Trends and correlates." *Population Index*, 50, pp. 350-386.
- Duncan, G. & Hoffman, S. (1985). "A reconsideration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marital dissolution". *Demography*, 22, pp. 485-497.
- Garfinkel, I. (1992). Bringing fathers back in the child support assurance strategy. *The American Prospect*, 9, pp. 74-83.
- Garfinkel, I., McLanahan, S., & Weston, D. (1989). "Divorce, female headship, and child support". In M. Ozwa (ed.), *Women's life cycle and economic insecurity*, pp. 101-131. New York, NY: Greenwood Press Publisher.
- Hanson, T., McLanahan, S., & Thomson, E. (1998). "Windows on divorce: Before and after". *Social Science Research*, 27, pp. 329-349.
- Hoffman, S. (1977). "Marital instability and the economic status of women" *Demography*, 14, pp. 67-76.
- McLanahan, S. & Booth, K. (1989). "Mother-only families: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pp. 557-580.
- Molira, O. (1999). "The effect of divorce on African American working women".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32, pp. 1-15.
- Peterson, R. (1996). "A re-evaluation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divor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pp. 528-536.
- Schiller, B. (1995). "Legal and physical custody arrangements in recent divorces." *Social Science Quarterly*, 71, 250-266.
- Seltzer, J. (1994). "Consequences of marital dissolution for children". *Annual Review of Sociology*, 20, pp. 1247-1268.
- Stirling, K. (1989). "Women who remain divorced: The long-term economic consequences". *Social Science Quarterly*, 70, pp. 548-561.
- Teachman, J. & Paasch, K. (1994). "Financial impact of divorce on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e Future of Children*, 4, pp. 63-83.
- U.S. Bureau of the Census (2001).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users' guide* (3rd. ed.).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Ways and Means (2000). *2000 Green book: Background material and data on programs within this jurisdiction of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eiss, R. (1984). "The impact of marital dissolution on income and consumption in single-parent househol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pp. 115-127.
- Weitzman, L. (1981). "The economics of divorce: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property, alimony and child support awards". *UCLA Law Review*, 28, pp. 1181-1268.

- Winkler, C. (2001). "Sweden's child support guarantee and women's economic independence". *Journal of Poverty*, 5(4), pp. 29-49.
- Yoon, H. & Lee, Y. (June, 2002). *A policy rationale to compensate mothers economic loses upon marital disruption*. Paper was presented at The 2002 Policy Conference. Charleston, SC.

## The Role of Social Safety Net in Divorce and Separation: Social Safety Net in the U.S. and Implications for Korea

Yoon, Hong-Sik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the context of dramatic change in the formation of the Korean family,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ole of social safety net in family disruption. This study selected 366 individuals who experienced family disruption, mainly divorce and separation, using the 1996 Panel of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SIPP). Methodologically, due to the absence of proper longitudinal data in Korea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tudy analyzed the SIPP and attemp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confirmed that women with children experienced severe economic decline upon family disruption. American social safety net was insufficient to protect mother with children from poverty. Findings imply that Korea needs to develop public policies to protect mother-only-families, who experienced family disruption, from poverty. Expanding and reforming the eligibility of public assistance can be an important policy recommendation. A strong guideline for awarding child support, an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EITC may have a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the income of mother-only-families.

Key words : family disruption, divorce, separation, social safety net

[접수일 2003.2.4 게재확정일 2003.4.21]